

변호사의 직무위반

지난 23년간 뉴욕에서 변호사로서 활동을 하다보니 유감스럽게도 주변에서 변호사의 직무위반에 관련된 문의가 적지않게 들어옵니다. 한 예를 들자면, 김씨는 차량사고에서 상대방의 과실때문에 상해를 당했습니다. 그는 업소록에서 상해사고 변호사들중 가장 크게 광고를 낸 변호사를 찾은 후 그 사무실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 후 그 변호사 사무실에서 나온 사무장하고 상담을 하였고, 그 변호사를 선임하는 변호사 고용계약서에 김씨는 서명하면서 사건을 그 변호사에게 의뢰했습니다. 그 후 사건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그 변호사 사무실로 연락을 하면, 그 변호사는 항상 법원에 있다는 이유로 통화를 할 수가 없었고, 사무장하고만 통화하게 되었다. 하도 답답해서 그 변호사 사무실로 찾아가면 변호사는 만날 수도 없고, 이제는 사무장도 김씨를 피하는 추세라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상황은 우리 주변에서 적지않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변호사 사무실의 사무장이 보험 에이전트와 함께 일을 하며, 그들로부터 사건을 의뢰받습니다. 한가지 주의할 점은 변호사 사무실의 사무장은 대부분 그 변호사 사무실의 한 직원에 불과하지 뉴욕주 변호사 라이선스를 소유한 변호사가 아닙니다. 대부분 그 변호사 사무실의 한 직원에 불과하지 뉴욕주 변호사 라이선스를 소유한 변호사가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이런 사무장들의 주 업무는 새 사건을 확보하고 고객관리를 잘해서 그 변호사가 효율적으로 사건을 처리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각종 문제의 발생은 변호사가 사건의 중요한 부분을 사무장에게 맡기고 심지어는 고객의 사건에 충실하기 보다는 소홀하게 거의 관여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변호사가 될 때 공공에 대한 의무를 지키는 것을 선서합니다. 이 의무 중의 하나가 고객의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윤리적이고 충실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변호사는 그들의 고객과 소통을 해야 할 의무가 있어서 고객의 질문에 답을 한다던가 사건의 진행상황에 대하여 설명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각종 문제가 생기는 원인은 변호사 선임 및 계약 과정에 있다고 봅니다. 변호사하고는 한번도 상담을 안해보고 오직 사무장하고만 상담한 후 변호사 선임계약을 했다면, 과연 변호사하고 계약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사무장하고 계약을 한 것입니까? 본인의 사건을 변호사에게 의뢰하는 것이지 사무장에게 의뢰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지혜롭고 현명한 방법은 변호사를 선임하기 전에 변호사와 직접 상담한 후 모든 궁금한 것들을 질문한 후 변호사와 직접 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변호사들은 변호사가 될 때 공공에 대한 의무를 지키는 것을 선서했지만, 의뢰인은 변호사를 선임할 때 변호사와 직접 상담함으로 과연 이 변호사가 나의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윤리적이고 충실할 것인지, 아니면 너무 바빠서 소홀이 할 것인지, 아니면 충분한 경험과 전문지식(Know-How)이 있는지를 확인한후 선임 계약을 하면 아마도 후회가 없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만약에 이런 부도덕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변호사를 선임했을 경우 어떤 방법이 있는 지 설명하겠습니다.

첫째, 본인의 사건을 빨리 처리할 수 있는 새로운 변호사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상해사고 사건은 여러 가지 시효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새 변호사를 찾아야 될 것입니다. 만약에 너무 늦게 새 변호사에게 연락을 하시면 새 변호사가 본인이 사건을 처리하기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건을 거절할 것입니다.

둘째, **New York State bar AttorneyGrievance Committee(212-401-0800)**에 불만 사항을 고발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에 대한 불만사항이 그 변호사가 소속된 뉴욕주 변호사 불평호소기관에 접수되면 그 변호사를 상대로 징계를 해야하는지에 대하여 조사를 진행할 것입니다.

박응범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718-463-7790 / 917-562-9143



